

『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폐지이유

- 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「행정절차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, 또한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

4. 참고사항

- 「행정절차법」 제1조
- 「법률구조법」 제1조
- 법제업무운영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 조례안은

- 주민들의 권리 상위법령인 「행정절차법」, 「법률구조법」 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구체적인 명시로 인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임

○ 검토결과

-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,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